

맡길 때는 쉬웠지만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회수할까?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직무보상제도, 가지급금, 상속증여, 기업가정신, 온·오프 직원교육 등 법인에 필요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자 시 과세 문제와 신해법

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과거 받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과점주주 회피 및 배당소득세 축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률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한 각종 탈세와 조세 회피를 찾아내는데 집중을 한다는 뉴스를 한 번은 보았을 것이다. 이후 수많은 법인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문의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골치 아픈 경우 중 하나가 명의신탁 이후 증자를 한 경우이다.

이렇게 증자를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고 명의신탁을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최근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A 법인은 200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1억 원으로, 1주당 주식가격은 5000원에 2만주를 발행하였다. 과점주주 회피 및 배당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만주를 명의신탁 하였으며,

이때 명의신탁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하여 향후 실명전환에 대비하였다. 이후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여 2014년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었다. 총 2만주를 증자하였고 명의신탁자에게 또다시 1만주를 명의신탁 하였다. 이때 증자 당시 주당 평가액은 50만 원으로 평가 되었다. 이러한 A법인은 2016년말 명의신탁주식 환원 문제를 문의하였다. 대표이사에게 먼저 최초 명의신탁 한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증여세가 과세됨을 설명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은 5천만 원(1만주×5000원)이 되며, 증여세는 5백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했다.(가산세 제외) 명의신탁 환원 시점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면 본래 자기주식 환원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2014년 증자 시점의 증여세는 과세가 되는데, 이유는 유상증자 신주를 명의신탁자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자 당시의 주식 가격으로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이다.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다. 증자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은 50억 원(1

만주×50만원)이 됐다.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25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를 이행하기 힘들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 증자 전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였다면 5백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25억 원이라는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사실관계 및 예상 세금을 분석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세금 부담이 너무 크게 되어 도저히 실행하지 못하는 법인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이 컬럼에서 소개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신해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신해법을 활용하게 되면 세무사 사전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이익관리 및 주식관리 자금준비 필요하지 않고, 과점주주 취득세와 의제배당이 배제되며, 국세청 사후 검증을 거치게 된다. 그래도 불안한 CEO를 위해 사후책임보증과 계약 및 공증을 진행한다. 위의 A법인도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주식 해결이 불가능해 신해법을 활용하여 소액의 법인세로 처리 할 수 있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안정성과 세금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신해법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02-6969-8918)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http://biz.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수: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자문세무사



박상혁

스타리치어드바이저
기업컨설팅 전문가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때 '세금폭탄' 피하려면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해지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나, 해지되는 시점이 아닌 당초 명의신탁 한 시점의 주식가격으로 과세가 된다.

즉 법인 설립 당시 차명주식이 발생되었다면 액면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환원하였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당초 명의신탁 한 시점의 주식가격은 크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인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서의 주식가격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주식발행 및 증자대금 납입근거
2. 배당금의 실지귀속 자료
3. 명의신탁해지약정서
4.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따라서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위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주식가격을 필수로 확인하여 예상되는 증여세를 체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시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격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주식의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 등 차명주식이 여러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진 않는다.

즉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방법의 주의점은 증자 및 지분이동, 배당이 있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증자 및 지분이동이 있는 경우 또 한 번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배당을 한 경우라면 배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변동신고와 가산세 등으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차명주식 회수를 위해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02-6969-8918)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http://biz.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수: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자문세무사



문경숙

스타리치어드바이저
기업컨설팅전문가